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375호 2018. 8. 6(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 4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34호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35호 공시송달공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41호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3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6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홍보미디어과 [032-560-4146]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02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1,2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서구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주상1,2블록 주상복합 신축
2. 사업주체 : (주)디에스루원피에프브이 (대표 이봉재)
디에스네트웍스(주) (대표 김영철)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1,2블록
 - 나. 대지면적 : 70,42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466,221,1759㎡ (지하4층, 지상37~4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1개동 2,378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개동 726호 및 근린생활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1,231,323,934천원
4. 사업기간 : 2018. 09. 01. ~ 2021. 09. 01.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0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건지로 45-42 외 1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8. 0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08-0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42-12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45-42 (석남동)	20090922	이 도로의 총점 부근이 옛 건지골을 지나므로 명명(건지는 옛날 이 지역에 있던 마른 연못)	
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78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 16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향구인 북향을 지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93-2	인천광역시 서구 버들로 32 (왕길동)	20090922	예부터 오동나무와 버드나무가 많아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4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70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36-10 (백석동)	20171025	한들지구의 서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34	인천광역시 서구 한서로 36-7 (백석동)	20171025	한들지구의 서쪽에 위치	
6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67-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55번길 28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40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45번길 13-11 (원창동)	20090922	북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005-20	인천광역시 서구 완창로34번길 57-2 (마전동)	20120524	완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7-10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835번길 22 (원당동)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47-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로14번안길 8-2 (오류동)	20090922	오류로14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4-73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1번안길 18 (청라동)	20130730	보석로11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04-71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1번안길 14 (청라동)	20130730	보석로11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0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207번길 61 (원창동)	20131202	북향로 시작지점에서 약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46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32번안길 45 (원창동)	20131202	북향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25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305번길 44 (당하동)	20171025	드림로 시작지점부터 약3,05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3-152	인천광역시 서구 북향로193번길 120 (원창동)	20171025	북향로 시작지점부터 약 1,930m 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0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인천 검단신도시 AA4블록 유승한내들 신축
2. 사업주체 : (주)유승종합건설 (대표 민광옥)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AA4블록
 - 나. 대지면적 : 57,12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153,713.4289㎡ (지하3층, 지상24~25층)
 - 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10개동 938세대 및 이에 따르는 부대·복리시설
 - 마. 사 업 비 : 346,520,492천원
4. 사업기간 : 2018. 10. 19. ~ 2021. 09. 18.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8-1134호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757호(2016. 5.30.)로 공람·공고한 (가칭)금곡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안)이 변경되어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요(변경없음)
 - 가. 구역명칭 : 금곡 도시개발구역
 -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158-6번지 일원
 - 다. 면 적 : 565,477㎡
 - 라.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가. 시 행 자 : (가칭)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 나. 시행방식 : 환지방식

3. 입안할 개발계획의 개요(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565,477	100.0	-	565,477	100.0
주거용지	소 계	322,486	57.0	감) 27,556	294,930	52.2
	단 독 주 택	12,502	2.2	증) 503	13,005	2.3
	공 동 주 택	309,984	54.8	증) 28,059	281,925	49.9
상업용지	소 계	32,913	5.8	감) 10,511	22,402	4.0
	일 반 상 업	32,913	5.8	감) 10,511	22,402	4.0
도시기반 시설용지	소 계	206,736	36.6	증) 38,109	244,845	43.2
	도 로	72,854	12.9	감) 465	72,389	12.8
	주 차 장	5,004	0.9	증) 585	5,589	1.0
	공 원 · 녹 지	96,878	17.1	증) 26,609	123,487	21.8
	교 육 시 설	30,000	5.3	감) 9,500	20,500	3.6
	공 공 청 사	2,000	0.4	감) 316	1,684	0.3
	문 화 시 설	-	-	증) 2,500	2,500	0.4
	체 육 시 설	-	-	증) 3,100	3,100	0.5
	복 지 시 설	-	-	증) 2,500	2,500	0.4
	하 천	-	-	증) 2,076	2,076	0.4
	저 류 지	-	-	증) 11,000	11,000	2.0
	가 스 공 급 시 설	-	-	증) 20	20	0.0
기타시설	소 계	3,342	0.6	감) 42	3,300	0.6
	중 교 시 설	3,342	0.6	감) 42	3,300	0.6

나.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4.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 032-560-478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 032-560-3230)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인천시광역시공고 제2018-11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및제20호,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득한 사업장 중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된 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신고) 사항을 직권폐쇄 하고자 청문 실시를 위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8. 08. 06.(월) ~ 2015. 07. 20.(월)(15일간)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배출시설설치 신고사항 직권폐쇄
3. 공시송달자 및 내역 : “따로 붙임” (93개소)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배출시설 및 방지지설 폐쇄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배출시설설치 신고사항 직권폐쇄
6. 청 문 일 : 2018. 08. 22(수)(09:00~18:00) 인천서구청 환경보전과(별관 4층)
 - 담당공무원 : 환경보전과 윤경희 (☎032-560-4632)
 - 청문주재자 : 환경보전과 산업환경팀장 조찬영
7. 근거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8. 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우리구의 배출시설 신고 사항이 직권폐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청문실시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공시 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때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우편반송자 명단

순번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허가번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업종
1	가정세차장	김진국	가정동 487-7	32(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세차시설
2	유일산업	문순석	가좌동 167-1	8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가공금속
3	㈜원진다이캐스팅 인천지점	대표이사	가좌동 173-107	2005-49(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가공금속
4	서구세차장	이병권	가정동 474-6	546(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세차시설
5	미광세차장	유정운	가정동 473-14	562(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세차시설
6	매직카	구분희	신현동 78-1	578(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세차시설
7	㈜우주상사	대표이사	가좌동 552-14	1449(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세차시설
8	삼덕이화공업㈜	남강우	석남동 650-12	1467(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가공금속
9	이화팜택㈜	이정협	금곡동 산237-1	150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화학제품제조
10	영풍운수	김수성	금곡동 522-1	1705(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운수
11	㈜신성위더스	정재훈	당하동 765-17	1781(대,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목재
13	코니엔지니어링㈜	대표이사(민경직)	석남동 650-37	2004-11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그외기타분류안된 특수목적용기계
14	상보건설㈜	노희상	가좌동 602-14	1916(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가공금속
16	태양전자	이상민	석남동 223-271	2033(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전자부품제조
18	우리자동차공업사	김봉식	심곡동 279-8,9	2338(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세차시설



우편반송자 명단

순번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허가번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업종
19	송월전자	이동현	석남동 223-268	2340(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인쇄회로기판제조업
20	코스필	정원기	원당동 634-5	2389(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섬유
21	광성목재산업(주)	김규정	석남동 223-425	2427(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목재가공
22	평화기업	박상희	당하동 765-28	2460(대,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목재가구제조
23	윤성화학	박항영	불로동 579	2505(대) 2006-102(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고무제품제조
24	공주식품	이해효	당하동 산222.223	2576(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과일및채소 절임식품제조업
25	(주)정오산업	대표이사	석남동 221	2675(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목재가공시설
26	성원산업	박경임	마전동 7-3	2727(대,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목재및나무제품제조
27	우성산업	윤태정	원창동 157-5	2770(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인쇄회로기판제조업
28	라인퍼니처	홍성표	오류동 410-60	2778(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목재가공
29	우일합금	안창용	불로동 273-3	2004-61(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알루미늄주물주조업
30	금정공업(주)	양태열	석남동 650-60	2843(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액체폼프제조업
31	(주)진주목재	홍웅석	가좌동 167-8	2845(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목재가공
32	방주산업	강갑순	원창동 382-70	1463(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목재가공
33	(주)서구자동차공업사	대표이사	석남동 223-465	170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자동차정비



우편반송자 명단

순번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허가번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업종
34	(주)인항목재	대표이사	왕길동 130-47	1907(대.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목재가공
35	한강시스템(주)	대표이사	왕길동 191-1	2002-101(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제조
36	(주)국풍목재	대표이사	석남동219-12	2002-120(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제재및목재가공업
37	동명전자	이민도	원창동 53-3	2002-55(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장비
38	1급성광자동차공업 사	서종열	원당동 395,395- 1,435-5,6	2002-61(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자동차종합정비
39	스타산업	엄선초	가좌동 178-407	2003-46(대) 2003-49(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피막처리업
40	목재단지주유소	박준신	가좌동 119-1	2004-54(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세차시설(주유소)
41	(주)벨라보	김성희	금곡동251-1(구:산 152-1)	2003-59(대) 2003-38(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일반목재
42	(주)에이치제이	이용욱	불로동 496-1	2003-63(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도축,고기,수산물가 공및저장,처리시설
43	알개자동차공업사	조동진	가좌동 178-161	2007-22(대) 2003-95(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자동차정비업
44	한성화학	김승선	원당동 86-1	2010(대) 2535(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화학제품제조
45	이삭우드	최연식	당하동 765-8	2002-79(대) 2002-51(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건축물딩제제조업
46	아인산업	김병철	당하동 910-4	2002-80(대) 2002-91(수) 2002-52(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47	(주)퍼스트피플	백낙준	적당동 223-38 인 천테크피아 가동 401 402 403	2003-11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방송및무선통신기 기제조업외1
48	거성산업	김진동	가좌동 178-42(A동 4층)	2003-88(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목재문및관련제품 제조업



우편반송자 명단

순번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허가번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업종
49	청우퍼니쳐(주)	대표이사	가좌동 178-42(8동 3층)	2003-92(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목재문및관련제품 제조업
50	삼진자동차공업사(열실)	서영진	불로동 253-1	2201(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자동차정비
51	베로니카&이즈인갤러리	여세기	오류동 400-1,2	2484(대.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목재가구제조
52	동일인테리어가구	박병수	왕길동 130-44	2771(대,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목재가공
53	금호플라스틱	유정희	오류동 410-496	2891(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폐플라스틱 고무재생 재료가공
54	형제세차장	김상기	당하동 710	2895(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세차시설
55	(주)예조	이순철	가좌동 178-42(8동 1층)	2898(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목재가공
56	한국동우개발	대표이사	원당동 651-10	2916(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금속처리
57	금오	강동민	원당동 39	2004-16(대) 2004-18(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도장및기타피막처리업
58	행운수지	백용	오류동 686-2	2004-29(대) 2004-35(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가공및재생플라스틱원료생산업
59	(주)원택	대표이사	가좌동 178-62	2005-22(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모터사이클부품제조,금형제조업
60	세화주유소	성동석	당하동 832-1	2004-74(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주유소운영업
61	우정단미사료	한상호	왕길동213-2	2005-11(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사료제조업
62	(주)다비치가구	이영석	가좌동 602-1번지	2005-2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기타목재가구제조업
63	삼성산업	장성호	당하동 765-28	2005-31(대) 2005-44(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기타목재가구제조업



우편반송자 명단

순번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허가번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업종
64	현대월드판매(주)	대표이사(김종혁)	석남동204-50,51	2005-32(대,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토목공사및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
65	해성기업	장경식	가좌동 178-42(B동 3층)	2005-48(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기타목재가구제조업
66	건우산업	김용진	가좌동 178-42(C동 1층)	2005-53(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기타목재가구제조업
67	제일엔씨	주황철	가좌동 178-42(C동 1층)	2005-5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기타목재가구제조업
68	금강테크	박진명	가좌동 178-42 B동 2층	2005-61(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일반목재가구제조업
69	(주)심존	대표이사	가좌동173-214	2005-6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코크스및관련제품 제조업
70	중앙산업	황의화	불로동 657-2	2005-59(대) 2005-85(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도장및기타피막처리 업
71	진진식품	김영호	마전동 534-1	2005-65(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과실,채소및저장처리 시설
72	엑사운드	조한선	가좌동 178-72(일부)	2006-5(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일반제조업
73	(주)제이엔티	대표이사	대곡동 254-4	2006-9(대) 2006-19(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그외기타고무제품제조 업
74	(주)부흥골재산업	대표이사(구본경)	경서동 124-36	2006-10(수) 2006-24(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4호	골재채취업
75	샤인퍼니처	고표순	당하동 765-8	2006-15(대) 2006-31(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주방용및음식정용목 재가구제조업
76	(주)고려판넬	대표이사	당하동 466-1	2006-24(대) 2006-48(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그외 기타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78	씨티에스자동차공업사	강병준	검암동 613-2	2006-39(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자동차세차업
79	마실터세차장	이경재	마전동 521-7외1필지	2006-32(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자동차세차업



우편반송자 명단

순번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허가번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업종
80	(주)제일웰텍	대표이사	가좌동 178-42 A동 1층	2006-45(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목재가구제조업
81	(주)거산물산	대표이사	가좌동 272	2007-18(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운수장비세차
82	가좌현대기아모터스	김경호	가좌동 602-62	2008-1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자동차종합수리업
83	(주)이에스티전자	대표이사(김상진)	가좌동 178-164 내 덕테크노타운 105/106호	2008-28(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인쇄회로기판제조업
84	(주)윤석산업	윤태현	원창동 435	2008-32(수) 2008-47(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15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골재선별파쇄업
85	태성산업	문근수	원창동 382-101	2009-14(대) 2009-17(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판유리
86	(주)제이비테크	대표이사	가좌동 178-72 1,3층일부	2010-9(대) 2010-9(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그외기타고무제품제조업
87	엠에스개발(주)제2공장	대표이사	원창동 435	2010-15(수) 2010-1(소)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골재선별파쇄업
88	타이어킹	유환소	마전동 검단2지구 3블럭 1-1,1-2롯데	2010-29(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자동차세차업
89	(주)오지	대표이사	석남동 223-392번지	2010-5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박판합판및유사적층판제조업
90	아이원테크	전성완	석남동 223-27 가동 1호2층	2011-4(대) 2011-6(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인쇄회로기판제조업
91	주식회사 미학디자인	영선미	가좌동 178-65	2011-34(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기타목재가구제조업
92	에스에스코스메틱	원영희	가좌동 178-55(2층)	2011-47(대) 2011-39(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화장품제조업
93	성현산업	김성일	가좌동 178-268	2013-9(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기타건축용나무제품제조업
94	선두정밀(주)	대표이사	가좌동 598	2013-34(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그외기타금속가공업



우편반송자 명단

순번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허가번호	예정된 처분의 제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업종
98	신명목재(주)	길미옥	오류동 434-69	1960(대,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목재
99	학산산업	조희진	원창동 382-92	2689(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제19호 및 제20호	목재가구제조
101	대보써키트	김종덕	가좌동 560-6	2004-49(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직권폐쇄	○ 「물환경보전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15호	인쇄회로기판제조업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137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 합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안전보안관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을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용도 중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조건을 ‘영 제74조제6호’에서 ‘영 제74조제8호’로 변경(안 제7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2884,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안전보안관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을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

2.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 용도 중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6조)
-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조건을 ‘영 제74조제6호’에서 ‘영 제74조제8호’로 변경(안 제7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6호”를 “영 제74조제8호”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구 소속”을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출납폐쇄후”를 “출납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구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 한다.

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관리) -----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 -----.</p>
<p>제6조(기금의 용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p> <p>1. ~ 12. (생략)</p> <p><신설></p> <p>13. (생략)</p>	<p>제6조(기금의 용도) ----- ----- ----- -----.</p> <p>1. ~ 12. (현행과 같음)</p> <p>13. <u>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u></p> <p>14. (현행 제13호와 같음)</p>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p> <p>②·③ (생략)</p>	<p>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재난과 관련이 있</p>	<p>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는 구 소속 국·실·과장과 민간전문가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삭 제

⑥ (생략)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4. (생략)
- 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인천광역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

- 1. ~ 4. (현행과 같음)
- 5. 그 밖에 -----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출납폐쇄 후 -----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수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

제14조(준용) -----
-----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8.23., 2014.2.5. 2017.1.6>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삭제 <2018.1.18.>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6.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1.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13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자합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인감증명서 요구의 필요성이 낮고 대체할 수단이 있기에 불필요한 인감증명 제출요구 사무를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안전총괄실, 전화 032-560-2884, 팩스 032-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인감증명서 요구의 필요성이 낮고 대체할 수단이 있기에 불필요한 인감 증명 제출요구 사무를 감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신분증 사본’으로 변경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8-1141호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66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나.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4. 사업기간 : 2010. 08. 23.(실시계획인가일) ~ 2019. 08. 23.(환지처분일)
5. 사업 인정 근거

○ 사업인정일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46호(2010. 08. 23.)
6. 재결 신청대상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7. 공고 및 열람기간 : 2018. 8. 6. ~ 2018. 8. 20. (14일)
8.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52)
9. 공고내용
 - 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 손실보상 재결 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며,
 - 나.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명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1	경서동	249-169	건물 외	김원경 (계양용접기)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169 (계양용접기)	㈜한국씨티은행 (계양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24(다동)	근저당	
2	경서동	249-162	영업권 외	강은미 (부흥기업)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162 (부흥기업)				
3	경서동	350-9	영업권 외	강희대 (현대지게차인천판매)	인천 서구 중봉대로 782(경서동, 현대지게차)				
4	경서동	249-75	전시판넬 외	권오현 (부영철물)	인천 서구 경서동 249-75				
5	경서동	124-35 428-144	영업권 외	길병구 (길성자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496번길 76(경서동,길성자원)				
6	경서동	124-206	바닥 외	김귀자	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25, 103-803(대치동,대치SK뷰@)				
7	경서동	124-42	컨테이너 (주거) 외	김삼식(대한팜프카)	인천 서구 경서동 124-42(대한팜프카)				
8	경서동	124-24, 124-25, 124-97, 124-198	건물 (공장) 외	김상오	인천 서구 경명대로496번안길 5 (경서동, 대신페차)	㈜한국씨티은행 (신현동지점)	서울 중구 다동 39	근저당	
9	경서동	249-159	포장 외	김순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03길 17-4, 401호(역삼동)				
10	경서동	249-95	XL1500 외	김진권 (보아애드)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456(경서동,보아애드)				
11	경서동	350-9	컨테이너 (창고) 외	김형권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23-42, 102동 601호(용현동,한양2차@)				
12	경서동	124-24, 124-25, 124-97, 124-198	영업권 외	대신페차산업㈜	인천 서구 경명대로496번안길 5 (경서동, 대신페차)	㈜한국씨티은행 (신현동지점)	서울 중구 다동 39	근저당	
13	경서동	124-54	컨테이너(사무실) 외	박석인 (태양중기)	인천 서구 승학로498, 204호(검암동,서해프라자)				
14	경서동	124-58, 124-59	담장 외	박천규	인천 서구 경명대로496번길 84(경서동 124-58)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명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15	경서동	249-59	영업권 외	방학영 (공인중개사거북이사무소)	인천 서구 경명대로 446(경서동,거북이부동산)				
16	경서동	124-213	컨테이너 (사무실) 외	배재영 (누리건기)	인천 서구 중봉대로 398(원창동382-42, 누리건기)				
17	경서동	249-8	에어컨 외	보람상조프라임㈜	인천 서구 경명대로468(경서동,보람인천장례식장)				
18	경서동	249-130	영업권 외	서준석 (대성공업사)	인천 서구 경명대로496번안길 16(경서동,대성공업사)				
19	경서동	124-27	영업권 외	서진유통㈜	인천 서구 경명대로496번안길 15(경서동,서진유통)	씨제이제일제당주식회사 (주)국민은행(서인천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00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근저당	
20	경서동	124-41	건물(2층) (공장(1층)) 외	성보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27길 59, 501호(방배동,도브홀)				
21	경서동	124-58	건물 (주거) 외	송상균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57, 102-1409(목동,현대하이페리온)				
22	경서동	249-172	건물 외	송영소	인천 서구 경명대로414번길 10(경서동,코넷인더스트리)				
23	경서동	249-119 249-75	바닥 외	신능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07, 6동 2901호 (송도동, 송도 더샵퍼스트월드)				
24	경서동	124-41	영업권 외	심규석 (선양정밀)	인천 서구 중봉대로 744(경서동,선양정밀)				
25	경서동	249-149	영업권 외	윤영오 (동명자동차공업사)	인천 서구 경명대로406번길 16(경서동,동명자동차공업사)				
26	경서동	350-1	컨테이너 (창고) 외	이상목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06번길 27-11, 402호(검암동,청운하이츠)				
27	경서동	124-32 124-33	울타리 외	이상필 (경인중기)	인천 서구 경서동 124-34(경서동,경인중기)				
28	경서동	249-61	매실나무 외	이정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로31번길 34, 301호(경서동,정상빌딩)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명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29	경서동	124-27	가주 (창고) 외	이지원	인천 서구 경명대로496번안길 15(경서동,대원유통)				
30	경서동	124-36	건물 (작업장) 외	이창남	인천 서구 경명대로496번길 92(경서동,제우스유화공업)				
31	경서동	249-95	건물 (상가) 외	이효복(50) 최두환(50)	이효복-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486번길 21 (부평동) 최두환-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루비로 95, 205호(경서동,경연프라자)				
32	경서동	124-28	건물2층 외	임형택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404, 208동 2001호 (가좌동, 가좌한신휴플러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천가좌지점)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33	경서동	249-148	앵글 외	전표성 (삼원테크)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148 (삼원테크)				
34	경서동	124-38 249-12	영업권 외	정경숙 (한양금속)	인천 서구 경명대로496번길 90(경서동, 한양금속)				
35	경서동	249-149	영업권 외	정영철 (동명자동차공업사)	인천 서구 경명대로406번길 16(경서동,동명자동차공업사)				
36	경서동	124-40, 124-39	영업권 외	제우스유화공업㈜	인천 서구 경명대로496번길 92(경서동,제우스유화공업)				
37	경서동	124-213	컨테이너 외	㈜삼원로지스	인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6(유동, 2층)				
38	경서동	124-36	영업권 외	㈜삼인공업사	인천 서구 경명대로496번길 82(경서동,삼인공업사)				
39	경서동	249-23, 249-22	정자 외	주식회사 코넷인더스트리	인천 서구 경명대로414번길 10(경서동,코넷인더스트리)				
40	경서동	348-3	사무실 비품 외	차순표 (우리금속)	인천 남동구 백범로294번길16, 201동 2803호(간석동,간석LH2단지@)				
41	경서동	249-95	내벽공사 외	최명진 (청라블랙박스 네비게이션)	인천 서구 도요지로239-1, 101호(검암동,부성프라자)				
42	경서동	124-41	영업권 외	최병욱 (삼인공업사)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744(경서동,삼인공업사)				

물건소유자 및 관계인

사업명 :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연번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물건의 종류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내용	
43	경서동	249-149	건물1 외	최윤정(50) 구성엽(50)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65, 104-1302(시흥동,남서울힐스테이트@)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65, 104-1302(시흥동,남서울힐스테이트@)				
44	경서동	249-95	휴게실바닥 외	최현순 (청라유통)	인천 서구 경명대로456(경서동,청라유통)				
45	경서동	249-63	영업권 외	한창석 (한창자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249-63 (한창자원)				
46	경서동	249-95	컨테이너 외	서일종합건설㈜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456(경서동,서일종합건설)				
47	경서동	249-30	건물(사무실) 외	㈜대광기업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496번안길 110-15(경서동,대광기업)				
합 계				47명					영업권 총15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14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위임사무 중 일부 사무에 대한 정비
- 2018. 4. 18.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사무조정 사항 반영 정비

2. 주요내용

- 장사업무에 관한 위임사무 정비
- 2018. 4. 18.자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과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노인복지과의 장사업무에 관한 사무
정비
- 2018. 4. 18.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과 사무조정에 따른 부서변경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정비(별표 3)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정비(별표 4)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와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문화관광 체육과	1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 변경 다. 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6조	
	2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의 변경 다. 신고·등록증의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라. 행정조치(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0조 -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99조	
	3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허가 나. 신고·등록·허가 사항의 변경 다. 신고 및 등록·허가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허가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4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나. 공연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폐쇄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5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화상영의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재무과	1	구유 잡종재산의 관리 가. 실태조사 나.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다. 미수액 채납관리 라. 기타전산입력 처리 등	- 지방재정법 제73조	
	2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18조	
노인복지과	1	장례식장의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 등록현황 관리 나.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2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설치 등록 나. 경로당 변경, 휴·폐지 다. 경로당 운영지도	- 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3	장사등에 관한 다음사항 가.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나. 개인, 가족, 종중·문중을 대상으로 설치·관리하는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의 신고·허가 및 사후관리 다. 무연분묘의 개장 및 처리 라. 묘지이전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위생과	1.	<p>공중위생영업(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변경) 및 폐업</p> <p>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p> <p>다. 공중위생영업소지도단속</p> <p>라.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p> <p>- 같은 법 제3조의2</p> <p>-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9조의2</p> <p>-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p>	
	2	<p>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영업허가 등</p> <p>나. 영업 승계</p> <p>다. 출입·검사·수거 등</p> <p>라.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p> <p>마. 벌칙</p>	<p>- 식품위생법 제37조</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22조</p> <p>-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p> <p>-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102조까지</p>	
자원순환과	1	<p>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p> <p>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p>	<p>-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6조, 제45조, 제48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p> <p>- 같은 법 제39조</p> <p>- 같은 법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p> <p>-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된 규정</p>	
	2	<p>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p> <p>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 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와 관련된 사항</p>	<p>-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34조</p> <p>-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p> <p>- 같은 법 제34조</p> <p>- 같은 법 제61조,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p> <p>-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규정</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경제 에너지과	1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 농지법 제8조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 분통지서 발급	- 농지법 제10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 및 등본발급	- 농지법 제51조,제52조	
	4	일반소유 상환초과농지 소유인정서 발급	- 농지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 규칙 제6조제1항	
	5	대리경작자의 지정	- 농지법 제19조제1항	
	6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 칙 제54조	
	7	농지검사 및 조사	- 농지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57조	
	8	농지 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제1항	
	9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 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항	
기업지원과	1	공장입지 기준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9조	
	2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신설,증설,업종 변경,이전)승인 및 변경승인 나.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 신고 다.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라.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3조, 제20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의3 - 같은 법 제14조의3	
	3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 같은 법 제15조	
	4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부분등록 나. 건축물 등록 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5	공장이전의 확인	- 같은 법 제21조	
	6	기존공장폐쇄 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7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설,증설 승인 및 변경승인 나. 완료(변경완료) 신고	- 같은 법 제28조의2 - 같은 법 제28조의2	
	8	공장설립대장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제10조제4항	
	9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취소 다. 공장의 등록취소	- 같은 법 제13조의5 - 같은 법 제14조의4 - 같은 법 제17조	
	10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 같은 법 제55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축과	1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포함)등 (항측에 의한 위반건축물 제외)	- 건축법 제79조, 제81조, 제82조	
	2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 제113조	
	3	동당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4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사항변경 포함)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및 관리	- 건축법 제20조	
	6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 건축법 제83조	
	7	건축(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에 관 한 다음의 권한 가. 착공신고의 수리 나. 사용승인서 교부	-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제22조	
	8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 건축법 제36조	
	9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	- 건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도시재생 경관과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바.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의 취소 아.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자. 허가·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같은 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0조의2	

[별표 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세무1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자립지원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노인복지과	1	매·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가정보육과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저소득한부모가정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변동사항 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자원 순환과	1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권한 가. 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나.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신고		
	2	동 배치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3	이면도로 청소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	
	4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	-폐기물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63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에 관한조례제17조 내지제25조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1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6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8. 4. 18.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반영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중 위임사무명 “공설묘지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재위임하는 부서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정비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2018. 4. 18.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반영

2. 주요내용

-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사무의 재위임부서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정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사항(제2조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설과	1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4조	
노인복지과	1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제에너지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규모 도정업에 관한 권한제외)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나. 청문 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양곡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1조	
	2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중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협의에 관한 사항	- 농지법시행령 제39조	
	3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44조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권한	- 농지법 제38조	
기업지원과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나.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다.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라.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마.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바.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사. 정기검사 아. 수시검사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카.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타. 조사 파. 계량기 표시의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2조제1항 - 같은 법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 설 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2개구이상 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나.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다. 접도구역관리 라. 도로부지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마.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바. 도로점용지의 원상복구 면제승인 사.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아.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 자. 도로환경정비 차.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 도로법 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54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제66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50조 - 도로법 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2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한 시설물자의 사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3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중 차도·보도·측도·배수로·길도랑 유지관리 나. 사도개설허가 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도로, 비포장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 도로법 제31조 - 사도법 제4조 - 도로법 제50조	
	4	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가. 폭 20M미만 도로의 하수도유지 및 공사관련 사항 나. 연면적 1,000㎡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물의 사용 및 유지와 공사에 관련한 사항	-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5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나. 공공하수도의 감독	- 하수도법 제20조 - 같은 법 제37조	